임대료 납부 혹은 퇴거를 위한 15 일 전 공지사항

(2020 년 9 월 1 일 화요일에서 2021 년 1 월 31 일 일요일 사이의 임대료 미납)

(2021 년 2 월 1 일 및 해당 일 이후 제공된 통지에 사용)

(민사소송법 제 1179.03(c)(4))

수신인: _____

(임차인 귀하(귀중) 성명)

캘리포니아 주 공지

본 고지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, COVID-19 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지출이 증가하였다면 고지서와 함께 포함된 신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,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5 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본 제출을 진행할 경우 최소 지급만으로도 임차인이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(아래 참조). 비용을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. 기록을 위해 본 서명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보관하십시오.

2021 년 1 월 31 일 이전에 상기 내용대로 임대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, 2020 년 9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 사이 발생할 임대료의 최소 25%를 지불하기만 하면 COVID-19 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지출 비용 증가로 인한 임대료 미지불로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. 귀하의 임대인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까지 각각의 미납 임대료마다 신규 신고서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2020 년 9, 10 월 임대료 지급을 연기하기 위해 귀하께서 COVID-19 로 인한 수입 감소나 지출 증가에 관한 신고서 양식을 임대인에게 제출하셨으며, 2021 년 1 월 31 일 이전에 9 월과 10 월 임대료의 25%(즉 1 개월 임대료의 50%)를 납부하셨다면 귀하의 임대인은 귀하를 2021 년 1 월 31 일까지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. 2020 년 9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 중 발생한 임대료를 전혀 지불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사이 임대인이 발송한 각각의 15 일 전 고지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, 귀하께서 2021 년 1 월 31 일

이전에 9 월부터 1 월 사이의 전체 임대료의 25%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. (즉 1 개월 반의 임대료)

전체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하지만, 상기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퇴거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. 권리 보호 및 추후 발생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지불 금액 및 미지불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 본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 불법 거주자 조치(퇴거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부지 위치: _____

총 임대료 및 미납액 _____

_____ (월/연도) $_____

_____ (월/연도) $_____

_____ (월/연도) $_____

_____ (월/연도) $_____

_____ (월/연도) $_____

더 많은 법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https://lawhelpca.org/를 방문하세요.
정보 및 리소스,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www.LandlordTenant.dre.ca.gov 를 방문하시거나, 1-833-422-4255 로 문의하세요.

면책조항: 본 공지사항에는 민사소송법 제 1179.03(C)이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민사소송법 제 1161 조 혹은 기타 해당 연방, 주 또는 지방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, 이는 임대처의 특성 및 장소, 자금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추가 지침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및 법률 지원 조직, 임대인 협회, 혹은 임차인 변호 단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